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6. 21 선고 2022가단1116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단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성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5. 24.

판 결 선 고 2022. 6. 21.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10. 27. 접수 제210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원고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3. 8. 30.부터 2020. 4. 22.까지 원고로부터 5회에 걸쳐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D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20. 4.경부터 이자 납입 등을 지체하자, 원고가 2021. 7. 15. 위 D조합에 대출금 351,038,184원을 변제하였다.

나. C은 2020. 10. 27. 친형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등기소 2020. 10. 27. 접수 제210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은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C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20. 4.경부터 D조합의 대출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20. 9.경에는 사료대금 6억 원을 변제할 수 없는 등 이미 C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대위변제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아울러 C의 적극재산으로는 2,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통영시 E아파트 F호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는 C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위 D조합 대출금 약 3억 5천만 원, 사료 등 물품대금 7억 원, 신용카드 채무 약 5천만 원 합계 1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는 취소되어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C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C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조치 등을 취하기 전에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10. 27. 접수 제210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진석

별지